의안번호	2203668
의 뢰 인	장종태 의원
회 답 일	2024.09.09.
추계번호	24C3246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14조 (출연 또는 보조)	(제3항) 정부는 대학병원의 사업과 운영 등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출연, 보조 및 지원의 기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제5항)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1]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기존 출연금 및 보조금 규정 외에 '사업과 운영 등을 위한 경비'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지원의 기준·관리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지출규모에 대한 대한 합리적 예측이 어려움

○ 현행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은 대학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법 제14조제1항),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에 대한 '보조'(법 제14조제2항),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

1) 개정안은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관련 사무 및 인력, 예산 등은 이관될 수 있으나, 법 개정에 따른 직접적인 업무량 및 인력의 증원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추가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함

(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를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정부 보조'에 대하여 규정(법 제14조제3항)

-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에 총 111,369백만원(2024년 예산기준)을 편성[2] (서울대병원 고객주차장 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 2,726백만원, 분당서울대병원 복합진료지원동 건립사업 1,544백만원, 배곧서울대병원 건립사업 2,843백만원,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병동 리모델링 사업 668백만원, 서울대병원 의료장비 교체 및 구매사업 4,925백만원 포함)

[표 1]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교육부) 예산 산출세부내역

예 산	산출내역
사업출연금(350-02) 105,019,000천원	가. 시설확충 및 보수 (56,262,000천원) 나. 장비구입 및 교체 (31,085,000천원) 다. 정책사업 (17,672,000천원)[3]
민간경상보조(320-01) 6,350,000천원	정책사업 (6,350,000천원)[4]

자료: 교육부 2024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 개정안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의 사업과 운영'에 대한 경비를 정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될 경우 '기존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우선 충당되던 운영비 등'과 '대학병원의 사업'에 대하여도 정부의 지원이 실시될 수 있어 정부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 지원이 실시될 구체적 내역 및 소요 예산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

-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2023.10.)'의 성공적 이행을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바, 관련 사업 지원 등[5]이 추가로 실시될 가능성이 있음

2) 보건복지부에서도 771억원(2022년 기준)을 국립대병원에 지원('23.1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3) 임상교육훈련센터건립비
4)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사업
5)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2023.10.)'에서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 총괄기관', '중증·필수 세계 최고 임상·연구기관', '의과학 중추, 디지털·바이오 허브'로서의 서울대병원 등이 주축이 되어 국가중앙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에 대해 국가 특수목적 수행기관으로서의 별도 보상체계를 마련할 계획을 밝힘

❑ 이에 개정안에 관련 재정소요를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